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정책 주요내용

2021.05.24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이하 “회사”)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5조, 동법 시행령 제50조 및 회사 「내부통제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해상충관리 및 정보교류차단과 관련된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I. 정보교류 차단대상 정보

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기준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단, 다음 각 사항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 투자자가 예약한 증권의 총액과 증권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은 개인신용정보
 -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내부통제규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단, 다음 각 사항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
 -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 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승인을 받은 정보

II. 정보교류 차단대상 부문의 설정 및 각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정보의 종류

회사는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대상정보의 종류, 금융투자업자의 종류 및 경영·부수업무, 구체적인 업무 특성·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업무에 대해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1. 고유재산운용
2. 집합투자업
3. 투자매매업
4. 투자자문업
5. 기타 회사에서 정보교류차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무

III. 거래주의 및 거래제한 상품 목록 지정 기준

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 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은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하며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 등을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1. 거래제한 대상목록으로 지정되는 경우

- (1) 회사가 인수·합병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 주권(주권관련사채권을 포함한다)의 인수업무 및 모집·사모·매출의 주선업무 또는 지분의 매각 및 취득의 중개·주선·대리·조언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당해 업무의 규모 및 중요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거래제한 대상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 (2)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여 매매거래등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
- (3) 그 밖에 회사가 매매거래등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거래주의 대상목록 지정되는 경우

- (1) 회사가 지급보증업무 또는 기타 채권·채무자 등으로 참여 또는 관여하는 경우

- (2) 회사를 법 제133조제2항에 따른 공개매수사무취급자로 지정한 법인 및 해당 법인이 공개매수 하고자 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 다만, 공개매수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 (3) 제1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이 해당 업무를 회사에 위탁할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회사에 의뢰한 경우
- (4) 회사가 제1항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대 법인과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한 경우로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경우(법 시행령 제201조제1항 각호의 정보 및 그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 (5) 계열회사 관계 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 매매거래 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V.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 방안

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한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 (1) 세부지침 등 마련 및 운영 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의 사전 승인 등의 절차에 따라 이해상충 및 법령위반 가능성을 해소하고 거래를 하여야 하는 유형
 -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증권시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는 권유하는 행위
 -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 집합투자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지나치게 자주 매매하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집합투자기구 유형별로 매매회전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다만 세부지침 등에서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 한도 기준 등을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따른다.

(2)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자본시장법 제85조 및 제98조에 따른 금지 행위 .

-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3항으로 정하는 인수업무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등(자본시장법 제172조 제1항의 특정증권등을 말한다.)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 제1호의 시세를 말한다)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 등을 매매하는 행위
-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 투자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으로 명령 지시 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 재산을 운용하는 행위
- 자신이 운용하는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기 위해 다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가 교차하거나 순환하여 투자하는 행위

2. 이해상충 대응 방안

- (1)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에 대하여 사전 승인 및 사후 보고 절차를 통해 상시 점검
- (2) 사무공간 분리, 회의록 작성, 전산시스템 등 정보교류 차단 장치 설치 및 운영
- (3) 이해상충 가능성이 큰 부문간 정보교류에 대한 부문별 책임자 지정 및 관리
- (4) 이해상충과 관련된 불건전 영업행위 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